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9.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 (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에 고려

- (지원기간) 협약일~2023.11.30.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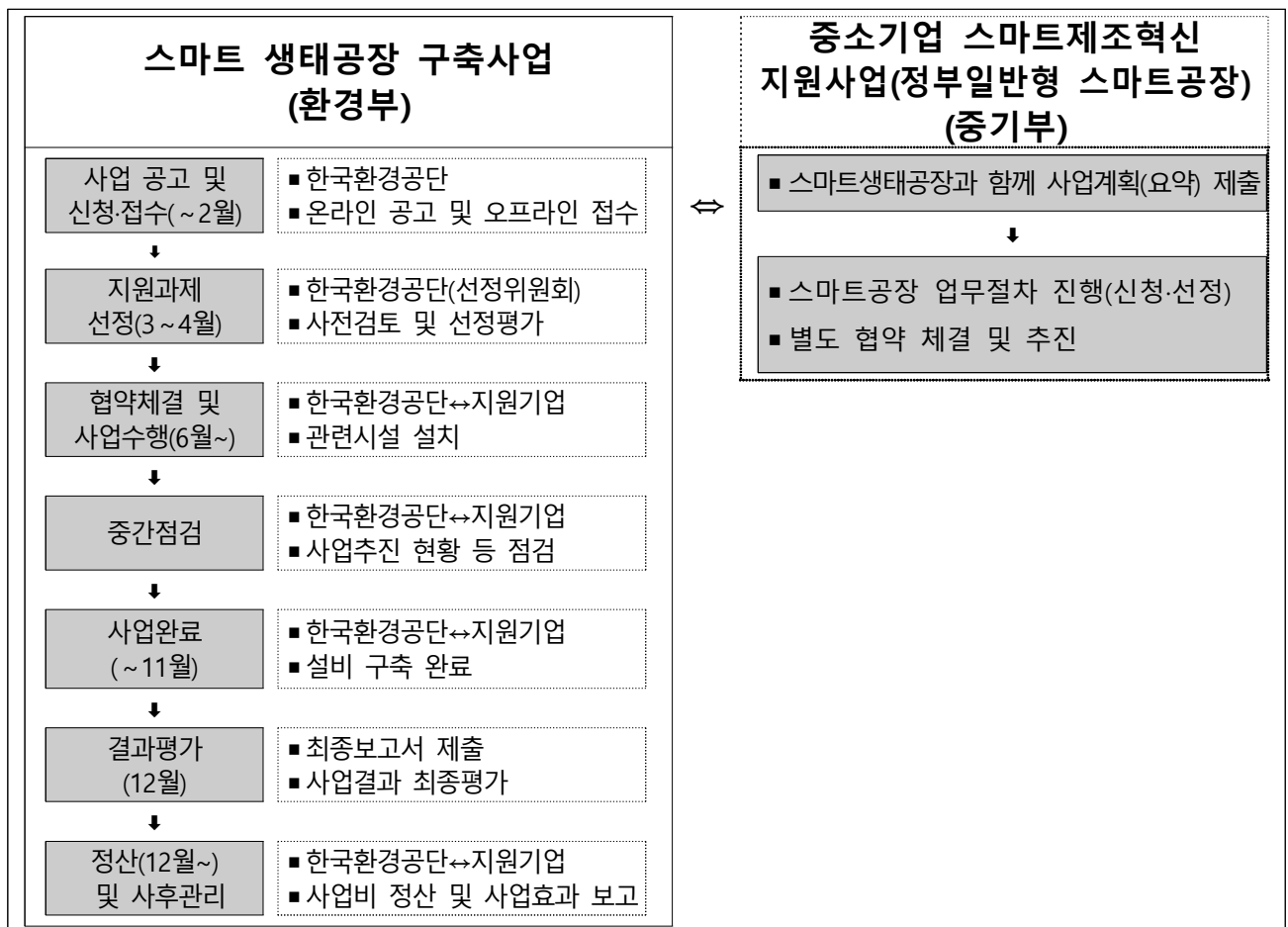
※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3.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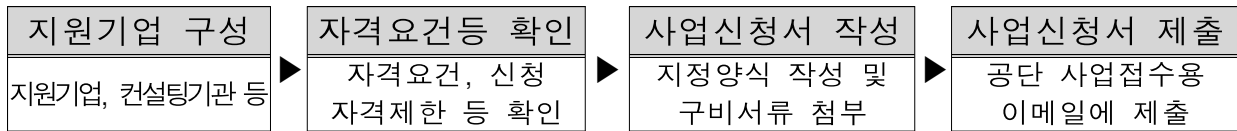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참조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 접수용 공단 이메일 계정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 공장)」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참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7)

5.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목)~2.28.(화) 18:00까지
- 제출방법: 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factory01@keco.or.kr)에 제출
 -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문의처
 - (전담기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04/4833

6. 공통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